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정신이상 발생

정혜운
책임변호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2팀

'밥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좋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정신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30세 여성 정모씨는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16일까지 정형외과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핏줄에서 벌레가 다니는 환각증상 등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정씨의 모친은 위 정형외과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장기간 약을 반복 처방하여 정씨에게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의증)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에게 정씨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반면 의료진은 정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위 약물 복용 중 정신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정신이상은 기왕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에게 처방된 약은 총 16가지[1]로 그 중 푸링정, 펜디정, 휴터민정, 판베시는 환각, 각성,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었고, 의료진이 위 약물을 처방한 일수는 총 375일이었다.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의료진이 약을 처방한 내용 이외에 복용 시 주의사항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 푸링정, 푸로핀정, 써모펜정, 슬림비정, 토팜정, 펜디정, 휴터민정, 살사라진정, 세티정, 큐링연질캅셀, 아페린정, 판베시 서방캅셀, 슈가펜, 비그만, 티오시드, 토피라메이드

그런데 조사한 결과 정씨는 2009년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러미널 남용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으면서 경계선 인격장애(의증)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다. 위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중학교 때 본드 시작, 그 후 러미널 복용, 러미널 복용으로 20세 이후 타 병원 입 · 퇴원 반복, 필로폰을 2번 정도하여 검찰에까지 갔고 모두 끊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 약 복용 시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푸링, 펜디, 휴터민, 판베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 환자는 환청, 환시, 현실 분별력 장애, 망상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정씨에게 처방한 의료진은 처방 초기부터 위의 약을 중복하여 고용량 처방하면서 필요 이상의 보조 치료제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환자에게 사전에 약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약물 처방 기간 동안 정씨를 문진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신중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정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계선 인격장애가 위 정신이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므로 위원회는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의료진이 정씨에게 치료비 및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손해의 30% 및 위자료 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고, 위 조정은 성립[2]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환자에게 사전에 약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